|  |  |  |
| --- | --- | --- |
| **<출입국 검사검역 절차 관리규정> 발표에 관한 통지**  국질검통 [2017] 437호  각 직속 검험검역국:  <출입국 검사검역 절차 관리규정>은 이미 질검총국 제260차 국장사무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관련 통지를 발표하니, 성실히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17년 10월 16일  출입국 검사검역 절차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검사검역 절차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검역 통관효율과 업무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출입국 검사검역 법률 및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검사검역 절차는 출입국 검험검역기구가 법에 의거, 출입국 화물 등 관리감독 대상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검사검역신고 접수, 무작위 표본검사, 현장 및科 실험실 검사검역, 동식물 격리검역, 검역처리, 종합평가, 합격증서 발급 및 통과와 파일링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절차시한은 검사검역의 업무단계별 처리에 한정된 업무시간을 가리킨다.  제3조 화물 리스크와 기업신용에 대한 분류관리를 실시하는 기초하에 합격 평가의 유관 절차에 의거하여 출입국 화물에 대해 검사검역 관리감독을 실시하며, 상응하는 검사검역 절차를 적용한다.  합격 평가 절차는 표본 추출, 검역과 검사, 평가, 검증과 합격 보증, 등록, 인가와 비준 및 각 항의 조합을 포함한다.  제4조 검사검역 절차관리는 ‘1회 검사검역신고 접수, 1회 검사검역, 1회 표본 추출, 1회 검역처리 및 1회 합격증서 발급 및 통과’ 원칙을 준수한다.  제5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에서 전국 검사검역 절차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직속 출입국검험검역국(이하 ‘직속국’)은 관할구 내 검사검역 절차관리와 실시를 담당한다. 직속국 소속 지점은 각 관할구 내 검사검역 절차의 구체적 집행을 담당한다.  제6조 검사검역의 모든 절차에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업무환경)서비스를 추진하며 검사검역 절차의 각 단계 업무의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업무환경) 서비스를 통해, 각 단계간 흐름을 가속화하여 처리시한을 단축시킨다.  제2장 절차단계  제7조 검사검역신고 접수는 검사검역기구가 검사검역 신청인이 제출한 검사신고서 자료에 대해 심사 수리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제8조 서류검사 무작위 표본검사는 검험검역기구가 관련 규칙 및 요구에 따라 검사신고서 정보 및 첨부서류 정보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각 절차 단계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검사 작업지시를 내리는 과정을 가리킨다.  제9조 현장 검사검역은 검험검역기구가 화물 적치 현장에서 출입국 화물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실험실 검사검역이 필요할 경우, 요구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실험실에 보낸다.  검역처리가 필요할 경우,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 실험실 검사검역은 실험실이 검사항목의 요구에 근거하여 접수한 샘플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며, 또는 확인이 필요한 유해생물 및 의심증상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여 검사 감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제11조 동식물 격리검역은 생체, 동물유전물질 및 식물종자, 종묘가 입국 후, 지정된 격리장(묘포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검역을 진행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제12조 검역처리는 검역처리 부문에서 검역처리 요구에 근거하여, 출입국 화물, 운송도구 및 기타 검역처리 대상에 대해 제해처리와 위생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제13조 종합평가는 검사검역기구가 합격 평가 절차에 근거하여, 출입국 화물이 요구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종합판정하고 검사검역 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제14조 합격증서 발급 및 통과는 검사검역 기구가 종합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출입국 화물에 대해 통관신고서 또는 기타 검사검역 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제15조 서류정리는 검험검역기구가 각 절차 단계에서 제출한 완전하고 유효한 문서 자료 및 데이터 등을 규정에 따라 파일링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제3장 절차관리  제16조 합격 평가와 관련된 절차 및 화물 리스크와 기업신용 수준에 의거하여 검사검역 절차는 본 규정 제2조에 열거된 모든 업무단계를 포함하거나, 그 중 몇 가지 업무단계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제17조 질검총국은 리스크를 평가한 기초에서 화물 리스크 수준과 기업신용 수준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현장과 실험실 검사검역 비율(이하 ‘표본검사 비율’)을 설정하고, ‘쌍수기(双随机, 검사대상의 무작위 선정, 검사인원의 무작위 선발)’방식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제18조 표본검사로 선정되지 않은 화물이 서류검사를 거쳐 요구에 부합될 경우, 합격증서를 발급하고 통과시킨다. 서류검사는 등록, 인가와 허가, 평가, 검증과 합격보증서의 심사 등 합격 평가 절차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표본검사로 선정된 화물은 규정에 따라, 현장과 실험실 검사검역 등을 실시한다.  제19조 검사검역 불합격 또는 리스크 등급이 높아지는 증거가 있는 화물 및 검사검역 신용이 C급 및 이하의 수화인출하인 또는 검역신고인에 대해, 리스크 평가를 거쳐 표본검사 비율을 100%까지도 높일 수 있다.  연속 표본검사로 품질안전 수준이 안정적이거나 리스크 등급이 낮아진 화물 및 검사검역 신용이 A급 및 이상인 수화인출하인 또는 검역신고인에 대해 리스크 평가를 거쳐 표본검사 비율을 최저 비율까지 줄일 수 있다.    제20조 질검총국은 통일적으로 화물 리스크와 기업신용을 분류하고 표본검사 비율을 확정하며, 절차시한을 제정하고 리스크 통제 감시를 실시한다. 정보화 시스템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여 동적 관리를 실시한다.  제21조 국내외에서 중대한 전염병과 품질안전 사건이 갑자기 발생할 경우, 질검총국은 상황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빠르게 일치화 반응 조치를 실시한다.  제4장 절차 관리감독  제22조 검사검역 절차는 정보화 관리를 실행하고, 절차의 전자기록은 실제 업무상황과 일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검사검역 절차의 각 단계는 적시에 검역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전달하며, 효과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제24조 각급 검험검역기구는 질검총국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조작의 규범성 및 업무품질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업무효율을 제고하고 절차시한을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5조 각급 검험검역기구는 검사검역 절차 집행상황의 감독검사체제를 구축하고, 절차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26조 질검총국은 각 직속국 검사검역 절차관리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하며, 각 직속국 절차시한 상황에 대해 실시간 예고를 하며 성과평가에 포함시킨다.  제5장 부칙  제27조 각 직속국은 실무 및 본 규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28조 출입국 화물포장, 운송도구, 컨테이너, 우편물 및 휴대물품에 대한 검사검역 절차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관련 공문에서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29조 출입국 화물의 리스크 분류는 질검총국 리스크 관리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30조 수출입기업의 신용분류는 질검총국<출입국 검험검역 기업신용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31조 본 규정은 질검총국에서 해석을 담당한다.  제32조 본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실시되며, 기존 국가출입국검험검역국이 발표한 <출입국 검험검역 절차 관리규정>(국검법 [1999] 386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별첨: 검사검역 표본검사 비율 및 절차 시간표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qtwj/201710/P020171018332211432380.xlsx> |  | **关于印发《出入境检验检疫流程管理**  **规定》的通知**  国质检通〔2017〕437号  各直属检验检疫局：  《出入境检验检疫流程管理规定》已经质检总局第260次局长办公会审议通过。现印发你们，请认真贯彻落实。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2017年10月16日  出入境检验检疫流程管理规定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检验检疫流程管理，提高检验检疫通关效率和工作质量，根据出入境检验检疫法律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所称检验检疫流程，是指出入境检验检疫机构依法对出入境货物等监管对象实施检验检疫的过程。一般包括以下部分或全部工作环节：受理报检、审单布控、现场和实验室检验检疫、动植物隔离检疫、检疫处理、综合评定、签证放行和归档。  本规定所称流程时限，是指完成每一个检验检疫工作环节所限定的工作时间。  第三条 在对货物风险、企业信用实施分类管理的基础上，依据合格评定的有关程序对出入境货物实施检验检疫监管，适用相应的检验检疫流程。  合格评定程序包括：抽样、检验（检疫）和检查；评估、验证和合格保证；注册、认可和批准以及各项的组合。  第四条 检验检疫流程管理遵循“一次受理报检、一次检验检疫、一次抽（采）样、一次检疫处理、一次签证放行”的原则。  第五条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以下简称质检总局）负责全国检验检疫流程管理工作。质检总局设在各地的直属出入境检验检疫局（以下简称直属局）负责辖区内检验检疫流程管理和组织实施。直属局所属分支机构负责各自辖区内检验检疫流程的具体执行。  第六条 推进实施检验检疫全流程无纸化，通过检验检疫流程各环节作业无纸化，加快各环节间流转，缩短流程时限。  第二章 流程环节  第七条 受理报检，是指检验检疫机构对报检人提交的报检单证材料进行审核受理的过程。  第八条 审单布控，是指检验检疫机构按照相关规则及要求，对报检单信息及随附单证信息进行全面审核，并对各流程环节布控作业指令的过程。  第九条 现场检验检疫，是指检验检疫机构在货物堆放现场对出入境货物实施检验检疫的过程。  需要实验室检验检疫的，按要求抽（采）样并送实验室。  需要检疫处理的，按要求实施。  第十条 实验室检验检疫，是指实验室根据检测项目要求对接收的样品进行检测，或者对需要确认的有害生物、可疑症状进行鉴定，并出具检测鉴定结果报告的过程。  第十一条 动植物隔离检疫，是指活动物、动物遗传物质及植物种子、种苗入境后在指定隔离场（苗圃）或指定场所进行检验检疫的过程。  第十二条 检疫处理，是指检疫处理单位根据检疫处理要求，对出入境货物、运输工具及其他检疫处理对象实施除害处理、卫生处理，并提交处理结果报告的过程。  第十三条 综合评定，是指检验检疫机构根据合格评定程序，对出入境货物是否符合要求做出综合判定并拟制检验检疫证单证稿的过程。  第十四条 签证放行，是指检验检疫机构根据综合评定结果对出入境货物签发通关单或其他检验检疫证单的过程。  第十五条 归档，是指检验检疫机构对各流程环节提交的完整有效的档案资料、数据等按规定建档的过程。  第三章 流程管理  第十六条 依据合格评定有关程序，以及货物风险和企业信用水平，检验检疫流程既可以包括本规定第二条所列所有工作环节也可以是其中若干工作环节。  第十七条 质检总局在风险评估的基础上，根据货物风险高低和企业信用水平，设置相应的现场和实验室检验检疫比例（以下简称“抽批比例”），并按照“双随机”方式实施抽批。  第十八条 抽批未抽中的货物，经审单符合要求的，予以签证放行。审单包括但不限于对注册、认可和批准，评估、验证和合格保证的审核等合格评定程序。  抽批抽中的货物，按规定实施现场和实验室检验检疫等。  第十九条 对检验检疫不合格或有证据表明风险等级提高的货物，以及检验检疫信用C级及以下的收发货人或报检人，经风险评估可以提高抽批比例，直至100%。  对连续抽批质量安全水平稳定或风险等级降低的货物，以及检验检疫信用A级及以上的收发货人或报检人，经风险评估可以降低抽批比例，直至最低比例。  第二十条 质检总局统一实施货物风险和企业信用分类，统一确定抽批比例，统一制定流程时限，统一组织风险布控，依托信息化系统开展大数据分析，并实施动态管理。  第二十一条 国内外突发重大疫病疫情和质量安全事件时，质检总局根据情况实施全国一体化的快速反应措施。  第四章 流程监管  第二十二条 检验检疫流程实行信息化管理，流程的电子记录应与实际工作情况保持一致。  第二十三条 检验检疫流程各环节应及时传递报检单及随附单证，实现有效衔接。  第二十四条 各级检验检疫机构要严格执行质检总局规定，在操作规范、确保工作质量的前提下，应努力提高工作效率，缩短流程时限。  第二十五条 各级检验检疫机构应建立检验检疫流程执行情况的监督检查机制，加强流程管理。  第二十六条 质检总局对各直属局检验检疫流程管理情况进行监督检查，对各直属局流程时限情况实时预警并纳入绩效考核。  第五章 附 则  第二十七条 各直属局可根据工作实际，依据本规定制定具体的落实措施。  第二十八条 出入境货物包装、运输工具、集装箱、邮寄物、携带物的检验检疫流程，参照本规定实施。相关文件另有规定的除外。  第二十九条 出入境货物的风险分类根据质检总局风险管理的有关规定执行。  第三十条 进出口企业的信用分类根据质检总局《出入境检验检疫企业信用管理办法》执行。  第三十一条 本规定由质检总局负责解释。  第三十二条 本规定自2017年11月1日实施，原国家出入境检验检疫局发布的《出入境检验检疫流程管理规定》（国检法〔1999〕386号）同时废止。  附件：检验检疫抽批比例及流程时限表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qtwj/201710/P020171018332211432380.xlsx> |